##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25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박홍배 · 윤준병 · 김태년

박정현 • 이용선 • 김태선

이광희 • 박 정 • 이용우

서미화 • 이재정 • 이정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

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 장하고자 함(제2조제14호 등).

### 법률 제 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의"를 "100명 미만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14
도"란 중소기업(상시 <u>30명 이</u>	<u>100명</u>
<u>하의</u>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미만의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	
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	
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	
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	
는 제도를 말한다.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	
속근로기간이 <u>1년</u> 미만인 근로	<u>3개월</u>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④ (생 략)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기 되지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 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생략)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① · ② (생 략)
-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 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 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u>다만, 가입자의 계속</u>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
	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u> </u>

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 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u>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	15조(급여수준)
	<u>다만, 가입자의</u>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